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8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9. 2) 상정
-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9. 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일자리정책과장 조 기 현)

□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직무 등의 기본방침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1) 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 사회적기업등 육성 및 지원방법(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
- 1) 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 수립·시행, 연계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지정 및 취소 등을 정함.
 - 2) 시설비, 행정·재정지원, 시세감면, 우선구매 등 지원 사항을 정함.
- 라. 보조금 교부 및 보고 등을 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 1) 목적외 사용금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마. 민간기업 참여 장려·확충 및 홍보 등(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기존의 법인들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는지요?	○ 기존 법인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음.
○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정작 목적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것 같음 이에 대한 의견은?	○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본 조례안에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이 함축되어 있음.
○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무엇까라는 물음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음.
○ 부천형사회적기업은 누가 지정하는 것인지?	○ 조례안 4조 구성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이 지정함. 이와 관련한

<p>○ 조례안 제4조 구성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꼭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p> <p>○ 조례안 제2조 3호 부천형사회적기업중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뜻하는 것인지?</p> <p>○ 조례안 제22조 지역내 민간기업·단체란 특정기업이나 단체를 지정하고자 뜻하는 것이 아닌지?</p>	<p>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임.</p> <p>○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음.</p> <p>○ 예를 들어, 청소과에서 시행중에 있는 폐 가구를 모아 깨끗하게 손을 본 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 등임.</p> <p>○ 특정기업을 비롯한 특정 단체나 이익 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님.</p>
--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부천형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부천형사회적기업”이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및 부
천형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 소속하에 부천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제10조의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사회적기업등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시의원
 2.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적기업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시 경제업무담당국장, 복지업무담당국장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관련업무담당국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
6.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등의 국내 및 국제적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연계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특정한 연계기업 및 사회적기업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기업등의 발굴·지원)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천형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부천형사회적기

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관계규정에 따라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천형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3.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등으로서의 활동 실적이 없는 때

④ 시장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용자를 지원하거나 국공유지 및 유휴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훈련 및 홍보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성을 기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유급·무급 포함)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해 시장이 요청한 사항 등

제17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목적외 사용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 및 보고 등)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등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

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23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